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강화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57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강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8.
3. 회 부 일 : 2025. 4.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 4).

Ⅲ. 검토의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강화

- 개정안은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현행	개정안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 ----- <u>목적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u> ----- -----.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현행법은 은행의 대주주¹⁾가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 등의 요구, 인사 또는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 경쟁사업자의 사업 방해, 법정 비율을 초과하는 신용

1)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이하 “지방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 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공여를 받는 행위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

<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유형(법 제35조의4 각호) >

- ① 미공개 정보 등의 요구
- ② 인사 또는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
- ③ 경쟁사업자의 사업 방해 행위
- ④ 법정비율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받는 행위
- ⑤ 교차신용공여 금지 위반하여 신용공여 받는 행위
- ⑥ 대주주의 다른 회사 출자지원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하여 신용공여 받는 행위
- ⑦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등 금지 위반하여 무상양도 받는 행위
- ⑧ 은행의 대주주 주식 초과 소유
- ⑨ 이에 준하는 행위(시행령2))

○ 이를 위반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³⁾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징금⁴⁾도 부과할 수 있음⁵⁾.

○ 이는 2002년 은행의 소유 규제를 완화⁶⁾하면서,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은행을 사금고화하거나 은행의 인사 및 경영 등에

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9(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3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 1.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2. 은행으로 하여금 제20조의7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 「은행법」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4) 「은행법」

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5) 「은행법」 외에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각 금융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음.

- 6) 동일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그런데 현행법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어, 은행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더라도 해당 행위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⁷⁾.

○ 예를 들어, 은행의 대주주가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헐값에 은행 자산을 매각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⁸⁾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더라도, 대주주와 제3자간의 이익 귀속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이에 개정안은 은행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참고로, 2017년,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

7) 제20대 국회 및 제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의안번호 제2108144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1722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 등

8) 2018년 예가람저축은행이 대주주 계열사인 용역회사에 정상가격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준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음.

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을 삭제할 것을 권고⁹⁾한 바 있었음.

- 또한,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관련하여, 현행 「은행법」의 규제 수준보다 강화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요건을 제외하고 있음¹⁰⁾.

9)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2017. 12. 20.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는 미비함
2015년 최고위층의 지시를 받은 모 금융지주회장이 최모씨의 자금 유출을 도운 해외 법인장 승진을 지시한 인사개입 사건 발생
2010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및 인사와 관련된 최고경영자들의 동시 퇴진 사건 발생
막강한 권력에 비하여 부당한 영향력에 대해서 거의 제재를 받지 않았던 금융계 ‘4대천왕’문제도 있었음

(2) 혁신위 권고안

은행법을 정비하여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
은행법 제35조의 4 조항도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해 추진하도록 권고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2017년 9월에 출범해 2018년 3월까지 활동한 한시적 자문기구

1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4.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5.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6.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 및 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
7.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다만, 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제3자 이익 제공 목적”을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 목적”을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규정 비교 >

현행 은행법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u>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u>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둘째, 「은행법」 외에,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¹¹⁾, 해당 규정들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 통과시 형평성 및 법체계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각 법률의 개정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11) 【참고자료】 금융관계법상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조문 참조

【참고자료】 금융관계법상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조문

법률	조 문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⑨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주요출자자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의 처

02)6788-5104